

3종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 계약서 106-86-30223

제1조 【계약의 목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40 님영빌딩 560 하 “손해사정업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특수 피해물(천기비 통신설비, 손해수정, 농작물, 기계류, 건설기계, 수입자동차, 자전거, 튜닝 및 이륜차량 등)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리카온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최장희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체”는 동 업무의 완료시까지 조속히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위임)

① “보험회사”은 그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해사정업체”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1.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액 사정업무 및 보험금 사정업무로서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

-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 3)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업무

② ‘손해사정업체’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금액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없다.

제4조(업무의 수임)

“손해사정업체”은 “보험회사”로 부터 업무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자 등과 협조하여 수임된 업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사정업무 진행사항 중간보고)

“손해사정업체”는 “보험회사”로 부터 수임 받은 업무 중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미 평가보험 계약물건에 대하여는 손해조사 후 손해품목, 수량 등 주요 조사내용을 자체 조사 양식 의거 의뢰 후 2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① “손해사정업체”은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액 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업무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내에 손해사정보고서를 “보험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 3)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업무
- ② "손해사정업체"은 전항의 보고서에 조사한 각 조사인과 제3종 손해사정사 및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① "보험회사"은 "손해사정업체"가 수임업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손해사정 기본 보수표"(별첨#1)에 의거 수수료를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내 지급한다.

②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10일 이내에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포함)으로 통지한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③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은 업무량, 위임한 업무내용, 업무범위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기밀의 유지)

①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기술상 비밀은 물론 고객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험회사"의 고객의 개인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한다)를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사용(제3자에게 양도, 위탁, 누설 등 포함)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험회사"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손해사정위임업체"는 고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손해사정위임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정책(화면 인쇄 및 복사기능 차단, 이동식 저장

장치 사용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손해사정위임업체”는 자신의 임직원(피용인, 사용인 등 호칭을 불문하고 “손해사정위임업체”의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대리인 및 위탁받은 자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기 임직원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⑤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일체의 고객정보를 즉시 반환 또는 폐기 및 “손해사정업체”의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⑥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고객정보 유출, 침해 등의 고객정보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체”의 고객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的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⑧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⑨ “손해사정업체”는 “보험회사”나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전산 파일 포함)에 대해 손해사정보고서 제출시 파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0조(위임업무 양도금지)

“손해사정업체”은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보험회사”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손해사정업체”가 이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손해사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손해사정업체”가 그 업을 중지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4.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손해사정업체”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손해사정업체”이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6.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으로 압류집행 또는 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7.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분쟁, 분규, 시위(1인 시위 포함)의 발생, 소송제기 및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8.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9. ‘손해사정업체’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존물을 처분 함으로써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 ②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①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해태하거나, 자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업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보장금(500만원 이상의 현금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본 계약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해당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는 위 계약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29일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체’

상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대로 382

대표이사 김 용 범 (印)

상호 106-86-30223

주소: 카온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최 장 흠

대표: 월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40 남영빌딩 5층



서 비 스 손 해 사 정

<별첨1> 손해사정 기본 보수표

구분	손해사정액	요율	기준액(원)	비고
기본보수표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원	1)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2)손해액이 소액(백만원)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원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원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원	
	1억원 미만	2.88	2,882,000원	
	1억원 이상	2.20	4,400,000원	
외산이륜차 /자전거	최저수임료		80,000원	위장사고 적발 및 손해절감 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조정하여 협의 할 수 있다.
	200만원 미만		120,000원	
	300만원 미만		180,000원	
	500만원 미만		250,000원	
	1천만원 미만		350,000원	
	2천만원 미만		450,000원	
	3천만원 미만			
여비/교통비 기준	대중교통		실비	KTX, 항공(제주), 버스 등
	승용차		유류대, 통행료	
	숙박비		40,000원	1일당
	일비		30,000원	식대(예비비 포함)

주1) 손해액 절감, 위장사고 적발 및 기타 특수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다.